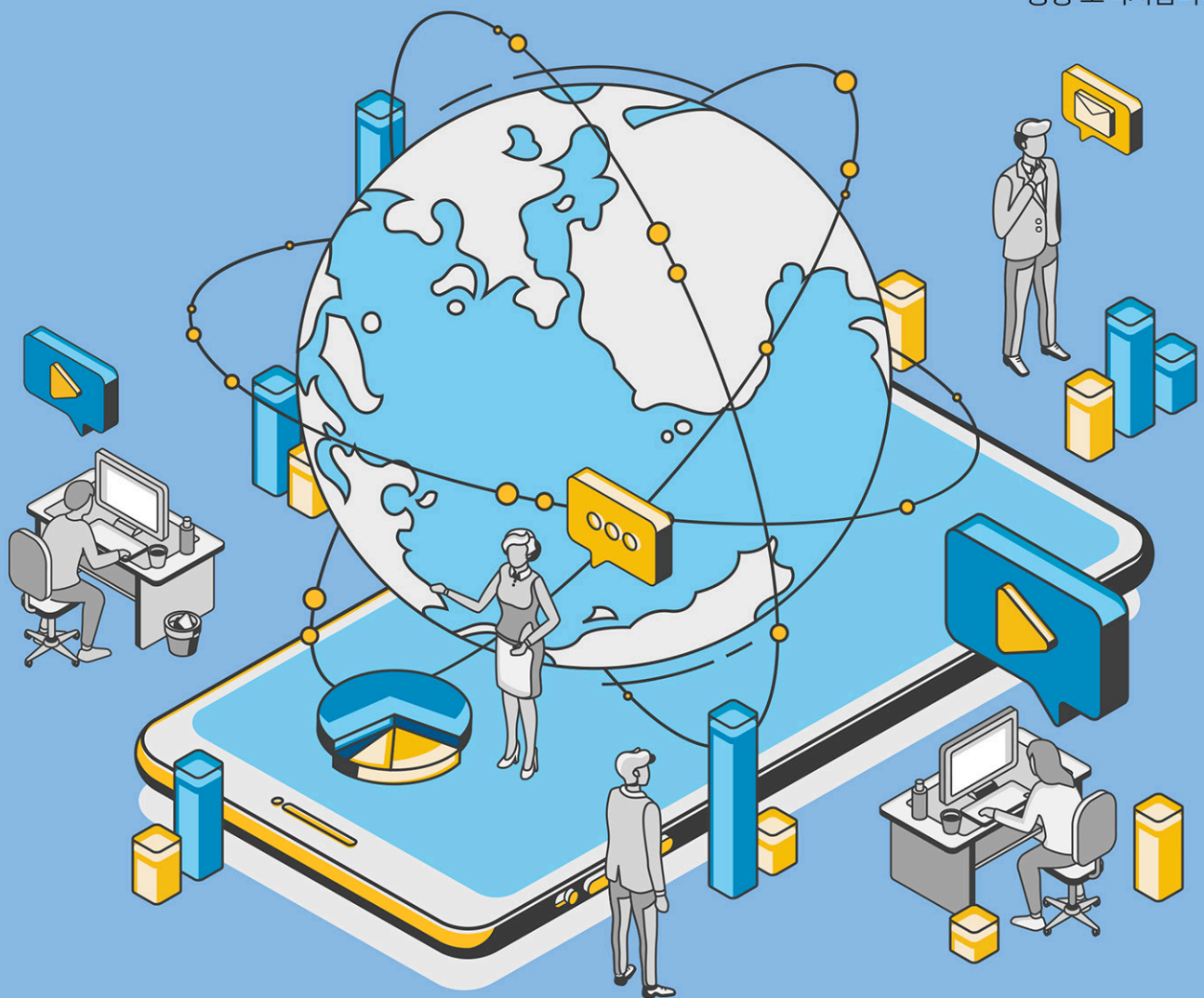


2nd, 2022

국제 안전보건 동향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별 국제 산업안전보건
동향 소식지입니다



Contents

• 요약문	03
• 영국, 호주, 캐나다의 중대재해처벌 제도	04
• 영국 산재 통계 실무 Q&A	14
•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자의 재활 및 업무복귀	19
• 국외 근로자 재해 기소 사례	22
• 세계 안전보건 행사	23



[요약문]

1 영국, 호주, 캐나다 중대재해처벌 제도 비교

영국, 호주, 캐나다는 영연방을 대표하는 국가라는 공통점 외에도 기업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 및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들 국가 제도의 개요 및 제·개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기업과실치사법 및 형법 상의 법률 조항 등으로 산업안전보건 규정 미준수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영국의 경우 호주와 캐나다의 산업안전보건 제도 구축에 큰 영향을 준 국가이며, 호주는 기업처벌과 관련한 법의 유무가 주(州)별로 상이한 것이 특징임. 캐나다의 경우 책임 귀속의 주체를 조직(Organization)으로 정함으로써 영국, 호주 등의 사람(Person), 기업(Corporate)보다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외 제도를 비교하기 위해 문헌 연구,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서신 등을 교환하였으나 모든 조사대상에 공통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음. 적시성을 가진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 '23년부터 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신규 추진예정인 「안전보건 공단 해외통신원」 제도와 연계하고, 현지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임

2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 실무 Q&A

국내·외 통계자료 비교분석을 위한 문헌조사 중 웹페이지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한계, 코로나 19 관련 대면 질의의 어려움 등을 극복하고자 이메일을 통해 영국 HSE(보건안전청) 통계 생산부서와 교환한 질의·응답서 정리

- 영국의 산업재해를 계산 시 모수가 되는 근로자수의 출처는 영국 통계청이 실시하는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임. 군 복무 중 발생 사고, 도로 교통사고, 근무 관련 행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국외 출장 업무 중 발생한 사고사망 등은 통계에서 제외됨. 하지만 자영업자의 사고사망은 통계에 산입 됨

3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자의 재활 및 업무 복귀

산업안전보건의 핵심 주제 선정과 위험성 관리 최적화를 위한 고용주의 역할을 살펴보는 최신 자료로서 재활 및 업무 복귀를 다룸

- 병가관리 준수 원칙에 근거, 병가 중인 근로자 관리
- 전문가(인간공학, 산업보건, 산업위생기술사, 의사 및 직업치료사 등) 지원 내용

4 국외 근로자 재해 기소 사례

영국 재활용 공장 직원의 작업 중 머리부상으로 사망함에 따라 해당 기업과 관계자 3명에게 200만 유로(한화 약 27억원)의 벌금 부과

5 세계 안전보건 행사

중대재해처벌 제도

영국, 호주, 캐나다의 중대재해처벌 제도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영연방 국가의 관련 제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 시행 이후 100여일이 지난 지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동법의 안착 지원을 위해 국외 동향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 중대법 시행 전후로 영국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은 언론 및 연구 등을 통해서 알려져 왔으며, 경제·사회 시스템 및 문화 등에서 영국의 영향을 받은 영국연방(이하 영연방) 국가 중 호주, 캐나다의 관련 제도 및 사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

이번 호에서는 그간 연구를 통해 알려진 영국·호주·캐나다의 기업처벌 관련 제도의 개요 및 제·개정 현황을 정리하여 최신화하되, 이른바 기업살인죄의 비교법적 고찰 등 학술적 내용은 본 동향 작성에 사용된 논문 등의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자 함

- 별도의 보고서* 및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참조하였으며, 호주의 경우 빅토리아주(州)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현지 통신원을 통해 검토한 내용을 수록함

* 호주 : National Review into model OHS Laws First Report : Australia

** 캐나다 : www.ccohs.ca/oshanswers/legsi/billc45.html

국가별 공통점 및 차이점을 고려한 관찰 지점 다양화

영연방 3개국은 중대재해 발생을 계기로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제도 신설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별도 법령을 제정함

- [공통점] 국가별로 제정 시기는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000년대 초·중반에 제정되었으며, 특히 로벤스 보고서가 영국은 물론 호주의 체계 구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구축 배경은 유사

* 각 관찰 구역(주, 준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로벤스 모델'을 기반함. 영국 Robens 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상세하고 규범적인 표준에서 보다 자율적이고 성과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바뀜

- [차이점] 단방제(영국)와 연방제(호주, 캐나다) 등 국가 시스템의 차이로 제도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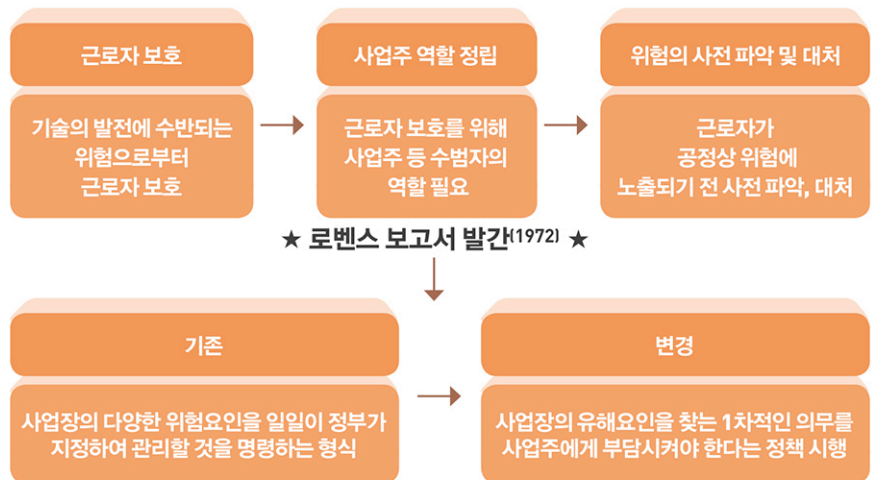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1)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71~103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시기도 앞서고, 로벤스 보고서의 영향으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통합 시 사업주의 의무를 일반조항 형태로 단순화하고 보호대상을 안전과 보건에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자(Worker)로 확대¹⁾

1960년대 산업안전보건법령



-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입안·집행하고 이를 감독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보건안전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을 설치함



영국은 1987년 선박침몰사고(P&O European ferry)와 1997년과 2000년의 열차사고 [Great Western Trains, Network Rail]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

- 동 법 제정 이전부터 '동일성 이론*(Identification Principle)'을 실제 사안에서 증명하기 어려워 기업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태가 이어져 왔으며, 결과적으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은 배제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입법

* 기업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의 경영결정권자(directing mind)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야 함

2)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97~102

-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실패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에 관한 대안 논의는 9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나, 법인 중과실치사죄는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경영책임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²⁾

* 현재는 사고의 경위와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8만 파운드부터 2천만 파운드(한화 약 3억에서 약 30억)까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파악됨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영국

영국 기업 과실치사법

제정년도	2007년
법안명칭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Corporate Manslaughter / 스코틀랜드: Corporate Homicide
제정배경	- 1987년 엔터프라이즈 여객선 침몰 승객 150명, 선원 38명 사망 → (법원) 기업 과실치사 위반 없음 - 1997년 자동경보시스템 문제에 기인한 철도사 7명 사망, 151명 부상 → (법원) 과실치사 위반 없음 - 2000년 금속 피로로 인한 열차선로 파괴 및 탈선 철도사고(Hatfield 철도사고) 4명 사망, 70여명 부상 → (법원) 기업 과실치사 및 임원 과실치사 모두 위반 없음 - 영국노동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을 처벌하는 법 제정 운동 전개
원칙조항	- 제1조3항 : 한 개인의 행동 보다 상위 경영진의 조직 관리 방식에 초점을 맞춤
대상	모든 사고
피해대상	사람(person; 근로자, 시민 구분 없음)
처벌대상	기업, 정부(정부부처의 서비스),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개인은 기업살인법 대상 아님. 기업살인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 판결 가능
적용규정	- 사람의 사망을 유발 - 사망자에 대해 해당 조직의 관련 관리의무에 중대한 위반(기대수준에 못미치는 경우) - 고위 경영진(의사결정, 실질적 관리, 구성)에 의해 조직이 관리 구성되는 방식으로 사망을 유발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내용	- 벌금의 상한선 없음 - 의회지침 상 기업의 1년 총 매출액 5%~10%범위/ 악의적인 경우는 10% 이상 * 양형 고려요소 - 사망 1명 이상이거나 부상 동반 - 감독관, 노조, 근로자, 일반인의 경고나 조언에 주의하지 않은 경우 - 안전문제 비용 삭감 - 안전관련 허가를 고의적으로 안 받거나 미 준수 -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부상(개인적 환경, 혹사당하기 쉬운 사람 포함) - 기업 주식 소유자의 재정 손실, 기업의 벌금으로 인한 가격 상승, 민사상 보상에 대한 책임은 처벌 양형에 관련 없음
기타 처벌	- 위반 구제 명령 : 재발방지 대책 집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증거 제출 요구, 구제명령 불이행 시 기소, 벌금 - 유죄 판결 공개 명령: 유죄 판결 사실, 위법행위 사항, 벌금, 구제명령 조건 등에 대한 공개 명령. 불 이행시 기소 벌금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영국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사례

년도	기업명	사고내용	처벌
2011	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	수로가 붕괴되어 시료를 채취하던 근로자 사망	- 벌금 3,850,000 파운드 - 기업 연 매출액의 250%
	R v JMW Farms	돼지 사육농장의 리프트에서 떨어진 금속 휴지통에 맞아 근로자 사망	- 벌금 187,500 파운드 - 기업 연 매출액의 18%
2012	리옹 스틸	물이 새어 틈이 있는지 살피보기 위해 지붕에 올라간 근로자 추락사망 - 기업과실치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공안전규정 위반을 각각 기소	- 벌금 480,000 파운드
	R v Murray and Sons	근로자가 동물사료 배합기에 빨려 들어가 사망	- 벌금 100,000 파운드
2013	R v Princes Sporting club Limited	고무보트를 타고 있던 일반인이 호수로 떨어져 사망(야광헬멧 미착용, 산업안전담당자의 사고 이전 경고 무시)	- 벌금 135,579. 69 파운드 (회사의 전체 자산 총액) - 유죄사실 공개명령
	모바일 스위퍼즈	근로자가 청소차 정비 후 차에 깔려 사망	- 벌금 183,000 파운드 (회사 재산이 12,000 파운드) - 2개 지방신문에 공표명령 - 이사 자격정지 5년

(1파운드 = 1,562원, 22년 6월 기준)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호주

호주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률은 주(州) 단위로 분화되어 있으며, 다층적인 감시 체계를 통하여 산업안전을 확립하고, 주(州)별·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자발적 산업 안전위원회를 구성함

※ 로벤스 보고서에서 제시한 산업별·지역별 분권형 산업안전 감시체계로서 영국에서는 실제로 채택되지 않음

3)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pp.104~133

- 산재예방과 산재보상 기능을 통합한 산업안전청(Safe Work Australia; 이하 SWA)이 산업안전 감독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상 원칙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사무로 위임하여 처리
- 연방-주(州)정부 간 “산업안전 규제와 관리 개혁 협약”에 따라, SWA는 산업안전 모델 법규(이하 모델법)의 제·개정, 실행 규범(Code of Practice)을 제정, 전국적으로 일관된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주(州)정부를 지원³⁾

호주의 각 주(州)별 중대재해 기업처벌 제도비교

구분	오스트레일리아 수도준주(ACT)	노던 준주 (NT)	퀸즐랜드 주 (QLD)	빅토리아 주 (VIC)	서호주 (WA)
도입 시기	2004년	2020년 2월 시행	2017년	2020년 7월 시행	2022년 중
관련 법	형법 (Crimes Act 1900)	산업안전보건법 (WHS Act 2011)	산업안전보건법 (WHS Act 2011)	산업안전보건법 (OHS Act 2004)	산업안전법 (Workplace Safety Act 1984)
근거 조항 및 명칭	제2A장 (Industrial manslaughter)	제6장 (Industrial manslaughter)	제2A장 (Industrial manslaughter)	제5A장 (Workplace manslaughter)	세부 법안 작성 중
대상	법인 및 고위경영자 (주별로 용어가 약간 다름)				
범죄성립 요건	① 심각한 부주의로, ② 고용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③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 (주별로 범죄 성립 요건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함)				
최대 벌칙	개 인	2,000 PU 내지 20년 징역	무기징역	20년 징역	25년 징역
	법 인	20년 징역 (법인은 벌금만 가능)	6만 5,000 PU	10만 PU	10만 PU
1PU (Penalty Unit)	개 인	\$ 160	\$ 158	\$ 133.45	\$ 165.22
	법 인	\$ 810			

출처 : 최수영(2020), “호주의 주별 중대
재해 기업처벌 제도”, 「건설동향브리핑」
제785호(한국건설산업연구원)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에 서호주(WA)의 관련 내용을 추가
www.allens.com.au/insights-news
/insights/2022/01/industrial-
manslaughter-laws-around-Australia

(\$ = AUD, 환화 900원, 22년 6월 기준)

* Penalty Unit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음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호주

호주에서는 산업안전에 관한 의무 위반 시 원칙적으로 벌금형으로 제재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사고 발생 시 일정한 요건 아래 인신구속형(징역형)을 부과하는 근거 규정도 존재하나, 이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관한 것으로 각 규정은 주(州)별로 차이가 있음

-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따른 법인과 고위 경영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CT)가 유일하므로 중대재해로 인한 법인과 고위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음

호주의 각 주(州)별 산업안전 근거법과 모델법* 위임 여부

주(州)	법령	시행일	위임 근거
NSW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2012. 1. 1.	○(제3조)
NT	Work Health and Safety (National Uniform Legislation) Act 2011	2012. 1. 1.	○(제3조)
QLD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2012. 1. 1.	○(제3조)
SA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	2013. 1. 1.	○(제5조)
TAS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	2013. 1. 1.	○(제5조)
VIC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2005. 1. 1.	X
WA	Workplace Safety Act 1984	1985. 1. 1.	X

* 연방 산업안전청(SWA)에서 재·개정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산업안전모델 법규

** 호주는 뉴사우스웨일즈(NSW), 퀸즐랜드(QLD),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A), 태즈메이니아(TAS), 빅토리아(VIC), 서호주(WA)의 6개 주와 호주 수도준주(ACT), 노던 준주(NT)의 2개 준주(특별행정자치구역)가 있음. 연방 정부가 준주 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준주와 주는 거의 동일한 기능을 가짐

호주 수도준주(ACT)

법률조항 및 명칭	형법(Crime Act 1900) 제2A장(Industrial manslaughter)
제·개정 현황	2004년 형법 상 산업 과실치사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근거 마련
범죄 성립 조건	법인 또는 경영진이 1) 심각한 부주의로 2) 고용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3)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처벌내용	- (개인) 최고 \$320,000 또는 20년 징역(동시적용 가능) - (법인) \$320,000
특이사항	- 형법 상 기업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따른 법인/고위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유일 보유 ※ NSW주 등은 형법 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제도 미도입(22.5.기준)

(\$ = AUD)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호주

퀸즐랜드 주(QLD)

법률조항 및 명칭	산업안전보건법(WHSA 2011)
제·개정 현황	- 2017년 산업안전보건법에 과실치사 조항 도입 - 2020년 산업과실치사 법안 통과
처벌기준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휴식시간 포함)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 고위 간부의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고위 관리자가 근로자 사망원인에 기여한 경우
처벌내용	- 최대 20년 징역(개인) 및 \$10,000,000(조직), 자원봉사자 제외
특이사항	-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위임원만 태만 행위로 처벌 → 근로자 사망사고를 과실치사범죄로 취급하는 형태로 개정

(\$ = AUD)

노던 준주(NT)

법률조항 및 명칭	산업안전보건법(WHSA 2011)
제·개정 현황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 과실치사 조항 추가 2020년 2월 개정 시행
처벌내용	(개인) 무기징역 (법인) \$10,270,000

(\$ = AUD)

빅토리아주(VIC)

법률조항 및 명칭	산업안전보건법(OHSA 2004)
제·개정 현황	- 2003년 제정 - 2018.11. 초안작성 → 2019년 개정안 양원 통과 - 2020.7. 시행(목적: 업무상 사망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법규 준수의 중요성 강조)
처벌기준	- 법인과 고위임원이 태만한 행동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 의무 위반한 경우 - 의무 위반이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초래한 경우 - 의무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내용	▶ 처벌내용: 최대20년 징역형(개인) 또는 최대 \$1,650,000(기업) ▶ 기존 산업안전보건 의무에 가감은 없으나,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가중

(\$ = AUD)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호주

서호주(WA)

법률조항 및 명칭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 현황	- 2019년 과실치사 조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 상정 - 2022년 세부법안 등 시행예정
처벌기준	- 사업주가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 근로자가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처벌내용	- 자영업자 또는 안전보건 의무를 가진 사업주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개인) 징역 최고5년, \$680,000 (기업) \$3,500,000 - 의무 불이행에 따라 근로자 등이 사망/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개인) \$170,000, (기업임원) \$350,000 (기업) \$570,000 - 최대 20년 징역/ \$5,000,000 (개인) \$10,000,000(기업) ※ 자원봉사자 미적용
특이사항	제정배경 -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약속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기대 반영

(\$ = AUD)

남호주(SA), 뉴사우스웨일스(NSW) 및 태즈매니아(TZ)

현황	- 현재 '직장 과실치사'와 관련한 특별 법령은 부재(22.5.기준)
----	--



캐나다

캐나다는 연방국가임에도 호주와 달리 연방이 형벌권을 행사하고, 기업의 형사책임은 '동일성 원칙(Identification principle)'에 따라 인정됨

- 제한된 범위에서만 기업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사업주 등의 위반행위가 기업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지속됨
-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26명 사망)'을 전환점으로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그 결과로 'Westray Bill(Bill C-45)'를 통하여 형법이 개정 및 시행됨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하는 있는 캐나다 형법에서는 책임귀속의 주체를 '조직(Organization)'으로 정하며, 이는 '사람(Person)'이나 '법인(Corporate)' 보다 포괄적 용어로 모든 비정형적 단체를 포함함

국가별 산업안전보건법 등 체계 및 제도의 특징



캐나다

기업의 형사책임은 과실 책임이 아닌 고위 임원(Senior Officer)이 고의로 행위한 경우 해당됨. 또한 고위 임원이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기업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한화 약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기업에게는 \$100,000(한화 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2004년 개정 후 10년간 매년 평균 1건이 Bill C-45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고,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시기	2003. → 2004.3.31. 시행
법안명칭	Westray Bill(웨스트레이법) / Bill C-45
제정배경	- 1992년 웨스트레이 광산에서 메탄가스 폭발로 인해 26명의 광산근로자 사망 - 광산의 내부 시스템, 관련법 무시, 기업의 광부 협박과 해고 위협, 정부의 허술한 감독 등 종합적 문제 대두 - 캐나다 노동조합 및 철강노동자의 “NO MORE WESTRAY” 투쟁 전개
원칙조항	- 일을 하거나 업무 수행 방법 지시에 책임이나 권한 있는 모든 자는 그 사람들 또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이나 업무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 부여 ▶ 대표자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 설정 ▶ “다른 사람의 작업을 지시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의무 설정
대상	캐나다 전역에서 타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 연방, 지방자치단체, 기업, 민간기업, 자선단체 및 비정부 조직
피해대상	근로자(worker) 및 시민
적용규정	① 부주의 입증(기소) - 단체 대표자중 1인이 위법행위 당사자, 대표자중 2명이상 작위 또는 부작위* 행위와 관련 - 책임있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② (단체의 이익을 위한 의도가 있는 상급관리자중 1명)의 잘못을 입증(기소) - 권한 범위 내에서 행위하는 상급관리자가 위법행위 당사자 - 위법행위를 구체화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 당사자가 되거나, 되고자 하는 것을 인식하고도 방지하는 합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처벌내용	① 개인 - 부상 : 최대 10년의 징역 / - 사망 : 무기징역 ② 기업 - 무한벌금과 법원의 재량에 따른 벌금
기타 처벌	- 위법행위로 고통 받은 자들의 손실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 단체의 추가적인 위법행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기준 및 절차 마련 - 정책, 기준, 절차를 대표자와 논의, 이행을 법원에 보고, 준수할 상급관리자 지정 - 일반인에게 공표 : 위법행위, 법원 판결,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기준 및 절차

* 작위 :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신체활동, 부작위: 마땅히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행위, 현대 형법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작위범의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부작위범은 예외적으로 처벌

국가별 특이사항 및 시사점

특이사항

유사점

- 형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 규정 준수에 대한 의무 불이행과 근로자/개인의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 영국, 호주, 캐나다 모두 벌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별 내용

- [영국] 호주 및 캐나다의 산업안전보건제도 구축에 영향을 주었으며, 법률 명칭은 호주 형법의 'industrial manslaughter'보다 협의의 의미인 'Corporate manslaughter'로 되어있음
- [호주] 기업을 처벌하는 법의 처벌 주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쟁점으로 '작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기업의 최고임원과 현업 담당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있음
- [호주] 기업처벌 관련법 및 조항 등을 개정하는 이유는, 높은 형량을 통해 사업주 등 책임자의 의무준수를 유인하기 위함
- [캐나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책임 귀속의 주체를 조직(Organization)으로 정하며 이는 사람(Person), 법인(Corporate)보다 포괄적 용어임

시사점

선행 연구, 국외 유관기관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서신 등을 통해 국가의 제도 및 시스템 등 파악은 한계가 있음. 적시성을 가진 양질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23년부터 신규 추진예정인 「안전보건공단 해외통신원」 제도와 연계하고 현지 유관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심층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임



Q&A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 실무 Q&A



[산업재해율 계산 시 모수 관련]

Q 산업재해율(Rate of injury)을 계산할 때 모수가 되는 근로자수의 출처는?

영국의 경우 산재 사고사망률 계산 시 모수인 근로자수의 출처는 영국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이 실시하는 연간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 APS)임.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간 산업별 근로자수 추정치를 내고 있음. 해당 조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영국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홈페이지 연간인구조사(APS) - QMI에서 확인할 수 있음

Q&A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 실무



[사고사망(Number of fatal injuries) 통계 산입 관련]

Q2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도 사고사망 통계에서 제외하는 유형이 있는가?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력행위, 점심시간을 이용한 체육활동, 워크숍 등의 행사,
회식 중 사고의 경우 등이 사고사망 통계에 산입이 되는가?

사업장 내의 모든 사망사고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 반드시 보고되어야 함. 그러나 업무상 사고 및 질환 신고 규정(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RIDDOR)에서 규정하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유형도 있으므로, 그럴 경우 산재 사망사고 공식 통계에서 제외됨

산재 사망사고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

- 군복무 중인 군인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
- 도로교통사고(단, 차량에 상차/하차와 관련된 사고는 제외, 도로 가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유지보수 등), 차량 혹은 기차가 운반 하던 적재물이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

한국의 사망재해 통계에서 제외되는 유형에 대한 답

- 영국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는 통계에 산입. 사망의 원인이 근무관련인 경우가 아니라면, 점심시간 혹은 근무관련 행사 중의 사고사망의 경우는 통계에서 제외

주요 정의 RIDDOR-HSE 작업장에서의 사건 및 사고 보고하기:
업무상 사고 및 질환 신고규정(RIDDOR 2013)에 대한 간단한 안내 INDG453(hse.gov.uk)

보고가능한 유형 RIDDOR-HSE

Q&A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 실무



[사고사망(Number of fatal injuries) 통계 산입 관련]

Q2-1 배달 업무 중 도로교통사고, 출장 업무로 인한 이동 중 도로교통사고 등도 제외하는가?

도로교통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사고재해 통계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차량에 물품을 상차/하차 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도로가 작업 시 발생한 사고 예) 유지보수
- 차량 적재물이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

* 공공 고속국도가 아닌 민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 사망으로 볼 수 있음

출장 업무 중 발생한 해외 사망사고의 경우, 영국 통계에 산입되지 않음

Q2-2 화학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같은 사고로 인한 질병은 사고사망 통계에 산입이 되는가?

만약 화학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과 같은 사고로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병하고, 해당 사고 발생 기준 12개월 내에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사망 재해로 통계에 산입됨. 그러나,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질병이 발병하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독립적인 사건이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통계에서 제외

예) 폐기물 관리 근로자가 근무 중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바늘에 상처를 입어 감염되고 해당 사고 기준 1년 내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 사망재해 통계에 산입 됨. 반면에, 꾸준히 석면에 노출된 건설 근로자가 은퇴 후 석면폐증(Asbestosis)을 진단 받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에는 통계에서 제외

Q&A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 실무



[RIDDOR 통계 관련]

Q3 자영업자(Self-employed) 통계는 ①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모두를 의미하는가?

업무상 재해의 경우, 보고되지 않는 재해가 많아 자영업자는 재해통계에서 제외되고 근로자만 산입 됨. 그러나 사망사고의 경우, 근로자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자영업자 및 근로자 모두 통계에 포함 됨.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사망사고는 규제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으나 해당 통계에 산입 됨

Q4 출퇴근 할 때 ① 도로나 대중교통 또는 재해자 소유 차량으로 이동 시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시 발생한 사고 두 경우 각각 RIDDOR 통계에 산입되는가?

1. 출퇴근 할 때 도로나 대중교통 또는 재해자 소유 차량으로 이동 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계에 산입하지 않음
2.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 시 발생한 사고*

* 공공 고속국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계에 산입되지 않지만, 사업장 주차장과 같은 민자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통계에 산입될 수 있음. 단, 사고의 원인이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Q5 ① 영국인이 다른 나라로 출장갔을 때 사고가 발생하거나 ② 영국 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RIDDOR 보고 대상이 되는가?

영국인이 다른 나라로 출장 시 발생한 사고는 산입하지 않음. 영국 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입. 즉,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RIDDOR의 보고대상이 아니지만 영국 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고대상임

Q&A 영국의 산업재해 통계 실무



[ILO 통계 관련]

Q6 HSE와 ILO*에서 확인한 사고사망 통계 수치가 차이가 있음.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출처	자료명	연도	수치
HSE	Number of fatal injuries	2018/19	149
ILO	Cases of fatal occupational injuries	2018	249

* ilostat.ilo.org/data

2018년 ILO 수치인 249는 Eurostat*이 Database-Eurostat에서 제시한 수치와 같음. 이는 ILO 수치의 출처가 Eurostat라는 점을 의미하고, Eurostat(ILO의 기준에는 영국이 EU의 일원이었던 2018년 당시 북 아일랜드내 산재 사망사고,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선박 및 항공과 같은 형태의 수송수단 사용 중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이에 따라 HSE 공식 통계수치와 Eurostat (ILO)의 발표수치상 차이가 생김

* 유럽연합 통계청(The statistical office of European Union)

업무복귀

산업 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자의 재활 및 업무 복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성공적으로 작업현장에 복귀 시킴으로써 사업주의 작업환경 개선 의지를 제고하고 추가적인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음이 선행연구* 등을 통해 알려져 왔음

* 사업주가 산재근로자 작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근로복지연구원, 이승욱)

특히 업무복귀(Return-to-work)프로그램 담당자의 유무, 사업장의 규모 등 경영 여건 등에 따라 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다를 수 있음. 따라서, 업무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질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영국 IOSH**에서 발간한 사례를 소개함

**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영국산업안전보건협회

왜 산업재해 이후 업무 복귀 시 복귀절차를 시행해야 하는가?

- 지난 2년간 근로자의 해고 및 재택근무 증가로 인해 효과적인 업무 복귀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짐.
- 팬데믹 이전에도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경우는 많았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가능한 한 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해야함
- 산업안전보건은 근로자들의 사고성 재해 혹은 업무상 질병 예방을 기본 목표로 하지만,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재활 및 업무 복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

병가 관리 준수 원칙 (6가지)

- 1) 병가관련 내용 기록
- 2) 병가 중인 직원과 긴밀한 연락
- 3) 작업장 통제 또는 조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 4) 전문가 조언 및 치료 제공
- 5) 업무 복귀 계획에 관한 근로자 동의 확보
- 6) 근로자 업무 복귀 시기 조정

- 관리감독자에 필요한 6가지 준수 원칙의 세부사항은 IOSH 산업 보건 및 복지 관리 과정 (Managing Occupational Health and Wellbeing course)에서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산업안전 보건 전문가가 작업장 통제 또는 조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행 시 도움이 되는 조언 제공 가능

전문가 지원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외에도, 직장 내 재활 및 업무 복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음
 - 1) 인간공학 전문가: 해부학 및 생리학을 작업 환경에 적용
 - 2) 산업보건 자문위원: 산업보건 간호사 또는 지역사회 공중보건 간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 3) 산업위생기술사: 화학적,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 건강 유해인자를 예측, 인식, 평가 및 조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
 - 4) 의사: 산업보건 전문의
 - 5) 직업치료사: 물리 또는 심리치료 전문가
- 사업주는 직장 내 재활 및 업무 복귀 지원 서비스를 사업장 외부로부터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기업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예시: 회사에서 외부 심리치료 서비스를 이용해 지게차 운전이 숙련된 근로자의 조기 업무 복귀 지원 → 근로자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재활 및 업무 복귀 지원 서비스 비용 대비 4배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둠

업무 복귀 지원 (IOSH 사례)

- IOSH에서는 재활과 직장 복귀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암 및 정신 질환 이후의 업무 복귀와 관련한 다양한 관점의 장애 및 촉진 요소를 살펴봄
- 암에 걸린 후 직장 복귀
 - 오늘날 영국에서는 63,000명의 암환자가 직장으로의 복귀를 희망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주의 지원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실정
 - 관련 연구(Healthy Working Lives, 2020)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적절한 지원을 통해 130,000명의 암 환자가 치료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사업주는 이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업무 복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출처 : www.iosh.com/work-after-cancer

업무 복귀 지원 (IOSH 사례)

- 일반 정신 질환 치료 후 직장 복귀
 -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정신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 연구는 사업주들이 직장 복귀 계획을 수립할 때, 복귀하는 직원의 요구가 무엇인지 더욱 세심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
([iosh.com/mental-health](https://www.iosh.com/mental-health))
- IOSH 산업 보건 및 복지 관리 과정(Managing Occupational Health and Wellbeing course)
 - 영국의 경우, 일선 관리자의 69%가 직원들의 정신건강 악화 여부를 인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 과정은 관리자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근무 환경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임.([iosh.com/health-and-wellbeing](https://www.iosh.com/health-and-wellbeing))
- 재활 및 업무 복귀에 관한 연구
 - 세계사회보장협회(ISSA)는 사업주가 업무 재통합(reintegration)과 재활에 투자한 1달러가 초기 투자 금액의 평균 3배 이상 수익을 실현한다고 추정.(ISSA, 2012, bit.ly/ISSA-return-on-work-reintegration)

* 참고 : KOSHA GUIDE H-50-2021 뇌심혈질환 근로자의 업무복귀시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KOSHA GUIDE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52-2021 요추불안전증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KOSHA GUIDE H-214-2021 암 경험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



국외 근로자 재해 기소 사례

재활용 기업 근로자 과실치사로 200만 유로 벌금



누가?

영국의 재활용 공장 직원이 머리 부상으로 사망함에 따라 해당 기업과 3명의 관리자에게 200만 유로(한화 약 27억원)의 벌금형 부과

무엇을?

2017년 7월 24일, 알루트레이드(Alutrade)사의 재활용 처리공장에서 고철을 컨베이어 벨트에 공급하는 호퍼* 아래를 지나던 근로자가 머리 부상을 당해 현장에서 즉사

- 작업자의 출입을 막는 문은 고장 난 상태로, 보수 정비 및 청소가 필요했으나 해당 기계의 작동을 중지하지 않음

* 갈때기 형태의 원료 투입구

왜?

올버햄튼 크라운(Wolverhampton Crown) 법원은 알루트레이드(Alutrade)사의 과실치사를 인정하면서 105,000유로(한화 약 140만원)의 보상금과 200만 유로(한화 약 20억원)의 벌금을 부과

- 이사급 책임자 2인과 보건 및 안전 책임자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산업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위반으로 유죄 인정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과실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지만 기업 과실치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경영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음

어떻게?

한 달간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수백 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

- 1) 재활용 고철 더미 위에서 호퍼의 막힌 부분을 제거하는 근로자 발견
- 2)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장치(리깅 장치) 없이 막힌 곳을 제거하기 위해 재해자를 5미터(18피트) 이상 들어 올림

* 이사급 책임자

- 3) 컨베이어 벨트 위를 걸어 다니며 막힌 부분을 청소하는 근로자 발견

※ 해당 사건의 공장 CCTV는 웨스트 미드랜드(West Midlands) 경찰에서 공개

세계 안전보건 행사



2022. JUNE.7

산업 보건 및 안전 분야의
건강한 직장 및
디지털화 관련 컨퍼런스

- 장소 :
체코 프라하
- 주최 :
체코 노동사회부

2022. JUNE.13~14

EU-OSHA 모범사례 경진대회

- 장소 :
벨기에 브뤼셀
- 주최 :
유럽연합 산업안전보건청(EU-OSHA)

2022. JUNE.13~15

2022년 직장에서의 웰빙에 관한
제6차 국제회의: 바쁜 시대의 웰빙

- 방법 : 온라인
- 주최 :
폴란드 노동보호 중앙 연구소
국립 연구소 및 유럽산업안전보건연구파트너십(PEROSH)

2022. JULY.6~8

직업건강 심리학 모범사례 촉진 학회

- 장소 :
프랑스 보르도
- 주최 :
유럽 직업건강 심리학회

국제 안전보건 동향

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Tel. 052.7030.745 Fax. 052.7030.326

E-mail overseas@kosha.or.kr

www.kosha.or.kr[Kr] [http://www.kosha.or.kr/english/index.do\[En\]](http://www.kosha.or.kr/english/index.do[En])

* 본 자료 및 출처(URL포함)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 국제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